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16호

「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·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## 강릉시의회의장

#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·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평일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진료서비스 제공 및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대상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·운영(안 제4조)
- 다. 재정지원 및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5조~제6조)
- 라.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관리 및 지정 취소(안 제7조~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lys2941a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·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##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·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·일·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강릉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심야어린이병원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,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·일·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.
2. “공공심야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으로서, 주민들에게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·일·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조제·판매를 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강릉시 내에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(이하 “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, 지정방법과 절차,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중복지원의 제한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관리)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8조(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 취소)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「의료법」 및 「약사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
3.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

단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